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45
----------	------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별조정교부금 반환 및 감액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공개 근거 마련(안 제11조제6항)
나. 특별조정교부금 반환 및 감액 기준 구체화(안 제13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4. 6. 7. ~ 6. 27.)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행정국 자치행정과 김마태 (☎02-2133-6343)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4에 따라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1. 자치구명
2. 교부일자
3. 사업명 및 사업내용
4. 교부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제1항 중 “자치구가 조정교부금”을 “자치구청장이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때,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시장의 승인없이 교부 조건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자치구가”를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청장이”로, “부분과 교부조건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특별조정교부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를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교부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자치구청장이 특별조정교부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하게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2.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경우
3. 시장의 승인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예산 미확보 또는 법적·행정적 절차상 하자 등 자치구청장의 귀책사유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5. 자치구청장이 사업기간 연장 등 정당한 사유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① ~ ⑤ (생 략) <u><신 설></u>	제11조(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29</u> <u>조의4에 따라 전년도 특별조정</u> <u>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다음</u> <u>각 호의 정보를 매년 시 누리집</u> <u>에 공개한다.</u> <u>1. 자치구명</u> <u>2. 교부일자</u> <u>3. 사업명 및 사업내용</u> <u>4. 교부액</u> <u>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u> <u>인정하는 사항</u>
제13조(부당한 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① 시장은 <u>자치구가 조정교</u> <u>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u> <u>과장 또는 거짓 기재하여 부당하</u> <u>게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때,</u> <u>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시</u> <u>장의 승인없이 교부 조건 또는</u> <u>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때</u> <u>에는 해당 자치구가</u>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교부조건 또는 용도를	제13조(부당한 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① ---- <u>자치구청장이 일반</u> <u>조정교부금-----</u> ----- ----- <u>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청장이 -</u> ----- ----- ----- ----- ----- <u>부분의 금액에 대하여</u>

현행	개정안
<u>변경하여 사용한 특별조정교부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u> <u><신 설></u>	<u>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u> <u>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교부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u> <u>1. 자치구청장이 특별조정교부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하게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u> <u>2.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경우</u> <u>3. 시장의 승인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u>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을 다른 자치구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다음 연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한다.	4. 예산 미확보 또는 법적·행정적 절차상 하자 등 자치구청장의 귀책사유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5. 자치구청장이 사업기간 연장 등 정당한 사유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특별조정교부금의 정보공개 및 반환·감액에 관한 사항으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행정국 자치행정과 김마태 (☎2133 - 6343)